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581호 2021. 2. 22(월)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17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1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3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2호 측량기준점표지(지적기준점) 성과 고시[신설] ----- 9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2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692호선 외 2개 노선)사업 사업
인정(의제)에 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 1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3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31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 1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44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4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52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2월 22일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1017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 (제3조제3항 관련)

항목별 기준

항 목	심 의 기 준	배 점	
음식점 40개소 이상 집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지구에 소재한 음식점은 40개소 이상 집단화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 40개소 이상: 16점 - 50개소 이상: 18점 - 60개소 이상: 20점 	20	
자치기구 (상인단체) 구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구청 또는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단체 등 자치기구가 있다. - 운영기간 1년 미만 또는 미등록: 6점 - 운영기간 1년 이상 : 8점 - 운영기간 2년 이상 : 10점 	10	
상인단체 등록 음식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인단체 등록 음식점 수는 4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 40개소 이상: 6점 - 50개소 이상: 8점 - 60개소 이상: 10점 	10	
음식문화거리 신청 동의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지구 거리 상인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10	
거리의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는 쾌적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 	10	
거리의 특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특화된 음식이 있다. 	1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음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 및 사회 공헌, 주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30	
	가. 국가 정책에 따른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 방안의 적정성		10
	나. 주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자체 계획 수립 여부		10
	다. 주민 친화 및 사회 공헌 방안의 적정성		10

비고.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

심의 기준

- 항목별 득점 비율은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심사자의 전체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2월 22일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10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년기업 인증)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이 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청년기업 인증방법)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본

② 구청장은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

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에 의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 후 청년기업 인증을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증한 청년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 발급번호는 인증관리대장에 작성 후 인증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제5조(인증서의 수정발급) ①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수정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수정발급을 요청한 경우,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의 현지 재실사를 거쳐 인증서를 수정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6조(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 인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만료 사실을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년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부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재인증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을 재산정하여 인증서에 기재한다.

③ 재인증에 따른 절차는 제4조에 따른다.

제7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년기업 []인증 []변경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업종
	대표자	형태 [] 법인 [] 개인	
	주소 (전화번호:)		

주생산품목

사업개시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청년기업의 []인증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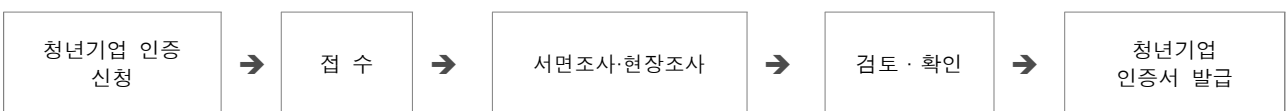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별지 제2호서식〕

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

현장실사일	년	월	일		
신청인	기업명			대표자	
	주소				
	[우]				
	설립(개업)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청년대표자 취임일	생산품목		업종(표준산업분류)		
세부의견					
조사결과	적격[], 부적격[]				

현장실사자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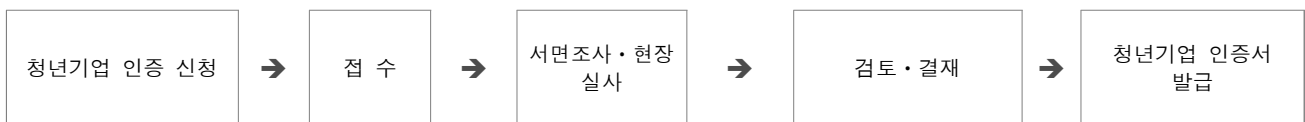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32호

측량기준점표지(지적기준점) 성과 고시[신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 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2. 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수 량 : 12점(지적도근점 신설)
- 측량성과 보관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 문 의 : 032-560-4822

연번	기준점		원점명	세계측지계				기타좌표(계양)		표고(m)	소재지	설치일(관측일)	표지재질	비고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m)	Y (m)	X (m)	Y (m)					
1	지적도근점	10061	중부	37°33'43.14140"N	126°38'23.20840"E	551444.54	168173.69	989.29	-6611.88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경서동)	2021. 1. 18.	철재	신설
2	지적도근점	10062	중부	37°33'39.95919"N	126°38'19.51101"E	551346.78	168082.57	891.28	-6702.73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경서동)	2021. 1. 18.	철재	신설
3	지적도근점	10063	중부	37°33'37.72159"N	126°38'20.19329"E	551277.73	168099.05	822.28	-6686.06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경서동)	2021. 1. 18.	철재	신설
4	지적도근점	10064	중부	37°33'40.94656"N	126°38'24.72491"E	551376.73	168210.65	921.57	-6574.74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경서동)	2021. 1. 18.	철재	신설
5	지적도근점	10065	중부	37°33'39.79389"N	126°38'29.66348"E	551340.73	168331.72	885.91	-6453.58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경서동)	2021. 1. 18.	철재	신설
6	지적도근점	10066	중부	37°33'41.22825"N	126°38'29.89375"E	551384.93	168337.54	930.12	-6447.88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경서동)	2021. 1. 18.	철재	신설
7	지적도근점	10067	중부	37°33'37.34270"N	126°38'31.15182"E	551265.02	168367.96	810.29	-6417.13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경서동)	2021. 1. 18.	철재	신설
8	지적도근점	10068	중부	37°33'39.11835"N	126°38'28.62487"E	551320.00	168306.15	865.11	-6479.09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경서동)	2021. 1. 18.	철재	신설
9	지적도근점	10069	중부	37°33'36.84417"N	126°38'25.17613"E	551250.21	168221.24	795.09	-6563.81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경서동)	2021. 1. 18.	철재	신설
10	지적도근점	10070	중부	37°33'34.86850"N	126°38'25.91903"E	551189.23	168239.24	734.16	-6545.65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경서동)	2021. 1. 18.	철재	신설
11	지적도근점	10071	중부	37°33'34.17314"N	126°38'21.68495"E	551168.19	168135.24	712.83	-6649.58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경서동)	2021. 1. 18.	철재	신설
12	지적도근점	10072	중부	37°33'33.47296"N	126°38'20.34010"E	551146.73	168102.15	691.28	-6682.61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경서동)	2021. 1. 18.	철재	신설

※ 지적기준점은 토지경계 분쟁 방지와 그 해결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측량표지로서 각종시설 등의 공사와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전재설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전을 요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구청 토지정보과(☎032-560-4822)로 문의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3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2. 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봉화로108번길 26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2.22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1-2-22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4-4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108번길 26 (오류동)	20090922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02-9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466번길 76 (청라동)	20190429	파랑로 시작지점에서 4,660m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32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692호선 외 2개 노선) 사업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류692호선, 대로2류61호선, 광로3류9호선, 사업명: 검단~경명로간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주민(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열람 공고하오니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 계양구 독실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류692호선, 대로2류61호선, 광로3류9호선)
 - 명칭 : 검단~경명로간 도로건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303,761㎡
 - 사업규모
 - 중로1-692호선: 폭원(24~117m), 연장(3,607m), 전체시행
 - 대로2-61호선: 폭원(20~75m), 연장(464m), 일부시행
 - 광로3-9호선: 폭원(40~49m), 연장(580m), 일부시행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12. 31.

6. 관계서류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 기간 : 2021. 2. 22. ~ 2021. 3. 10.
-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로과(☎032-440-3722), 서구청 도시기반과(☎032-560-4485), 계양구청 도시재생과(☎032-450-5633)
- 의견 제출 :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

8. 관계서류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제출서

사업명	검단~경명로간 도로건설공사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 계양구 독실동 일원		
사업자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공람기간	2021. 2.22. ~ 2021. 3. 10. (14일 이상)		
관련지번 (소유지번)	인천광역시	구	동
의견제출자	<input type="checkbox"/> 소유자 <input type="checkbox"/> 관계인 (해당사항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상 현주소)	연락처	
<p>사업인정에 대한 의견 ※ 소유자 및 관계인, 이해관계가 있는자 작성</p>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귀하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33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31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97호(2018.7.2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도로명: 소로1-311호선, 사업명: 검단로 609번길 소1-311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위한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기획담당관 ☎560-4762, 도시기반과 ☎560-4524)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720-3번지 일원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311	10	국지도로	340	중2-190	대곡동 산199-3	일반도로	서구고시 제2018-97호 (2018.07.23.)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311호선)
- 명칭: 검단로 609번길 소1-311호선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
					결정	금회	결정	기시행	금회	잔여	
당초	도로	소로	1	311	10	10	340	-	340	-	4,107
변경	도로	소로	1	311	10	10	340	-	340	-	4,117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실시계획 인가일 ~ 2021.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따로 붙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서구청 본관4층 도시기획담당관, 도시기반과
-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검단로 609번길 소1-311호선 도로개설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변경없음	마전동	312-1	도	45	45	임인*	인천 서구 마전동**	
2	변경없음	마전동	159-6	임	10	10	배양*	인천 서구 서달로 **	
3	변경없음	마전동	159-4	임	379	379	총도김씨*	인천 서구 마전동**	
4	변경없음	마전동	159-5	도	937	937	김원*	고양군 벽제면 성석리 ****	
							김광*	고양군 벽제면 성석리 ****	
							김원*	고양군 중면 일산리 ****	
5	변경없음	마전동	727-4	도	160	160	국	국토교통부	
6	변경없음	마전동	727-5	도	43	43	국	국토교통부	
7	변경없음	마전동	290-19	도	3	3	공	인천광역시	
8	변경없음	마전동	416-40	구	5	5	국	농림축산식품부	
9	변경없음	마전동	313-3	도	52	52	박성*	김포 검단면 불로리**	
10	변경없음	마전동	312-3	도	27	27	공	인천광역시	
11	변경없음	마전동	321-18	도	30	30	임종*	인천 서구 마전리**	
12	변경없음	마전동	321-3	도	82	82	문상*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이종*	인천 강화 길상 온수리 ***-*	
							이종*	경기도 용인 기흥구 중동 ****	
							이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3	변경없음	마전동	321-29	도	11	11	문상*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이종*	인천 강화 길상 온수리 ***-*	
							이종*	경기도 용인 기흥구 중동 ****	
							이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변경없음	대곡동	720-16	임	353	353	김형*	인천 서구 검단로 **	
2	변경없음	대곡동	720-13	도	54	54	공	인천광역시 서구	
3	변경없음	대곡동	720-10	도	1	1	임병*	인천 서구 마전리	
4	변경없음	대곡동	729-1	도	45	45	국	국토교통부	
5	변경없음	대곡동	719-3	도	136	136	공	인천광역시 서구	
6	변경없음	대곡동	720-12	도	13	13	공	인천광역시 서구	
7	변경없음	대곡동	720-15	임	63	63	윤태*	인천 부평구 부평동**	
8	변경없음	대곡동	720-14	임	10	10	윤태*	인천 부평구 부평동**	
9	변경없음	대곡동	720-11	대	9	9	윤태*	인천 부평구 부평동**	
10	변경없음	대곡동	713-16	도	918	918	국	농림축산식품부	
11	변경없음	대곡동	700-8	도	598	598	국	농림축산식품부	
12	변경없음	대곡동	718-4	도	75	75	공	인천광역시 서구	
13	변경없음	대곡동	729-2	도	1	1	국	국토교통부	
14	변경없음	대곡동	720-17	임	38	38	김형*	인천 서구 검단로 **	
15	변경없음	대곡동	700-9	도	3	3	국	농림축산식품부	
16	변경없음	대곡동	713-14	도	2	2	국	농림축산식품부	
17	변경없음	대곡동	720-6	도	10	4	공	인천광역시 서구	
18	기정	-	-	-	-	-	-	-	
	변경	대곡동	720-18	임	10	10	김형*	인천 서구 검단로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업명 : 검단로 609번길 소1-311호선 도로개설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 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변경 없음	마전동	313-1	가건물	컨테이너	20㎡	창고	박성*	검단면 블로리 **			
				담장	가설판넬	15.0㎡	담장	박성*	검단면 블로리 **			
				대문	철재	1EA	대문	박성*	검단면 블로리 **			
2	변경 없음	마전동	159-5	한전주	블로지 8628A 004	1주		한전인천 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변경 없음	대곡동	719-2	건물	블록조	11.2㎡	창고	송하*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	근저당권	
		대곡동	719-2	가건물	천막+철골	80.8㎡	창고	송하*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	근저당권	
		대곡동	719-2	담장	블록	96.5㎡	담장	송하*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	근저당권	
		대곡동	719-2	기둥	벽돌	1EA	기둥	송하*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	근저당권	
		대곡동	719-2	대문	철제	1EA	대문	송하*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	근저당권	
		대곡동	719-2	목공기계	-	1EA	-	송하*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	근저당권	
		대곡동	719-2	집진시설	-	1EA	-	송하*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	근저당권	
		대곡동	719-2	물탱크	FRP	1EA	-	송하*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	근저당권	
2	변경 없음	대곡동	720-16	한전주	태정지 1G1	1주		한전 인천 지역 본부				보조	
3	변경 없음	대곡동	713-13	한전주	태정지 8628A 213	1주							
4	변경 없음	대곡동	713-13	한전주	태정지 8628A 214	1주							
5	변경 없음	대곡동	713-13	한전주	태정지 8628A 321	1주							
6	변경 없음	대곡동	700-8	한전주	태정지 8628A 331	1주							
7	변경 없음	대곡동	700-8	한전주	태정지 8628A 334	1주							
8	변경 없음	대곡동	700-8	한전주	태정지 8628A 241	1주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 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9	변경 없음	대곡동	713-13	채신주	태정간 8M 우2	1주		KT				
10	변경 없음	대곡동	713-13	채신주	태정간 8M 우3	1주						
11	변경 없음	대곡동	713-13	채신주	F208R151 1-4	1주						
12	변경 없음	대곡동	700-8	채신주	06-11 F-14-20	1주						
13	변경 없음	대곡동	700-8	채신주	태정지3 8628A 331	1주		SK 텔레콤				
14	변경 없음	대곡동	700-8	채신주	C5011 2801 -2850	1주		KT				
15	변경 없음	대곡동	700-8	채신주	태정지 8628A 241	1주		SK 텔레콤				
16	변경 없음	대곡동	713-13	CCTV	742	1주		인천 서구청				
17	변경 없음	대곡동	700-8	CCTV	743	1주		인천 서구청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344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 조문 정비
-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
-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조문 신설

3.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신설된 법령에 맞게 개정 내용 반영 (안 제4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현대화사업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안 제5조)

- 10년이상 장기미집행 100분의 50 재산세 감면대상 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된 공원지역에 대한 100분의 50 재산세 감면 조문의 신설(안 6조의2)
- 감면 제외대상의 적용 법령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신설되어 조문의 정비(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 2021년 3월 1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 서면이나 전화(팩스)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주 소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본관 1층 세무1과

○ 연락처

☎ 032) 560-4203 / FAX 032) 560-2722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각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인투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전통시장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세제지원의 지속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위임 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반영 (안 제4조)
-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또는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여 시장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안 제5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라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을 받고 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되면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 전과 동일하게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 조문을 조례로 신설함 (안 제6조2)
-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신설에 따라서 제8조(감면 제외대상)의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로 조문 변경하고자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관계 법령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제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제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8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을 “법 제177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의 적용례) 제6조의2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한다.</p> <p>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p>	<p>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p> <p>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p> <p>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p>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 제5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

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제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제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

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
표준에서 감면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예 해당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조 제
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2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
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
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
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
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
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
의 100분의 30을 과세표준에서 감
면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예 해당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2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 설>

제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
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
상에서 제외한다.

----- 2022년 12월 31일
-----.

제6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
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
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
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
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
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
다.

제8조(감면 제외대상) -----
-----법 제177조-----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p>관계법령 및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세법」
<p>관련법규 정비사항</p>	<p>“해당 사항 없음”</p>
<p>관련자료</p>	<p>“해당 사항 없음”</p>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

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2.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 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④ ~ ⑭ 생략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및 조세감면결정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 15.>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 나. 제2호의8의 사업인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 다. 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 라.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2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2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2의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2의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2의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2의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3.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생략

③ 삭제

④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

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제1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⑦ ~ ⑩ 생략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삭제 <2014. 1. 1.>

3.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4.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⑬ ~ ⑱ 생략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통시장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 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 3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5의2. 생략

5의3. 생략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원녹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략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
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6. 12. 27., 2018. 12. 31.>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의 건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건	
4. 기 타	
<p>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의견 제출인 주소</p> <p style="text-align: right;">(전화 :)</p> <p style="text-align: right;">성명 (서명 또는 인)</p> <p>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34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된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 조문 정비
3. 주요내용
 - 주민세 과세체계 단순화, 구세 전환으로 세율변경
 -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 으로 변경
(안 제3장제1절 제목, 제8조, 시행규칙안 제3장 제목, 제1절 제목, 제9조, 제10조, 별지 제7호, 제8호 서식)

4.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1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2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560-4203 / FAX 560-272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각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81조가 일부 개정(21.1.1.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세 과세체계 단순화, 구세 전환으로 세율변경
- 나.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변경(제3장제1절 제목,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지 참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34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제9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사업소용”을 “그 사업소용”으로, “관할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절 재산분</u> 제8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u>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u> <u>표준세율을 적용한다.</u>	<u>제1절 사업소분</u> 제8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 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 <u>의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u> <u>세율</u>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 <u>제1항제2호의 세율</u>
제9조(신고의무) <u>재산분</u> 의 납세의무 자 또는 <u>사업소용</u> 건축물의 소유자 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 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하여 <u>관할 구청장</u> 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무) <u>사업소분</u> ----- ----- <u>그 사업소용</u> ----- ----- ----- ----- <u>인천광역시</u> <u>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

관계법령 발췌

「지방세기본법」

제11조(주민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지방세법」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③ 삭제 <2020. 12. 29.>

제84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81조가 일부 개정(21.1.1.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세 과세체계단순화, 구세전환으로 세율 변경

나.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변경

(조례안 제3장제1절 제목, 제8조, 시행규칙안 제3장 제목, 제1절 제목, 제9조, 제10조, 별지 제7호, 제8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지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34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를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주민세(재산분)”를 “주민세(사업소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10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3장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u> <u>제1절 주민세(재산분)</u> 제9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u>재산분</u>(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 (<u>재산분</u>)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0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 (<u>재산분</u>)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u>법 제83조제4항</u>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p>	<p><u>제3장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u> <u>제1절 주민세(사업소분)</u> 제9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 ----- <u>사업소분</u>----- ----- -----(<u>사업소분</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보통징수) ----- ----- ----- (<u>사업소분</u>) ----- - <u>법 제83조제6항</u>----- -----.</p>

[별지 제7호서식]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적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8호서식]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처리부

○○연도 ○○월분

(○○동)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 적	세 율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관계법령 발취

「지방세기본법」

제11조(주민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 ⑤ (생략)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2020. 12. 29.>

1. 삭제 <2013. 1. 1.>
2. 삭제 <2013. 1. 1.>

[중전 제4항에서 이동]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